

이사회 규정

목 차

제1장 총 칙	3
제1조(목적)	3
제2조(적용범위)	3
제3조(권한)	3
제4조(의무)	3
제2장 구 성	4
제5조(구성)	4
제6조(의장)	4
제3장 회 의	4
제7조(회의종류)	4
제8조(소집권자)	4
제9조(소집절차)	4
제10조(결의방법)	5
제11조(이사가 아닌 자의 출석)	5
제4장 부의사항	5
제12조(부의사항)	5
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	5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	6

제5장 위임 등	7
제13조(위임)	7
제14조(경영위원회 위임사항)	7
제15조(사후승인)	7
제16조(이사회 내 위원회)	7
제6장 회의관리	8
제17조(간사)	8
제18조(의사록)	8
제19조(규정의 개·폐)	8
부칙	8
제1조(제·개정)	8
첨부 1. 일반경영사항 중 경영위원회 위임기준	9

이사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이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-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4조(의무)

- ① 이사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사선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.

- ④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제2장 구성

제5조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6조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이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 선임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되, 동 순위자가 있는 경우 연장자가 우선한다.

제3장 회의

제7조(회의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3월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구두, 서면, FAX, Mail 등을 통하여 개최시기,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.

제10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되나, 의결정족수의 산정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이사가 아닌 자의 출석)

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.

제4장 부의사항

제12조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.
 -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1) 주주총회의 소집
 - 2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의 행사 허용
 - 3) 재무제표의 승인
 - 4)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5)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 - 6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), 주요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서의 보고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1)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
- 2) 신규사업투자
- 3) 경영계획 승인
- 4) 대표이사의 선임
- 5)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
- 6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
- 7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·폐
- 8) 지점, 공장, 사무소 등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1) 연간 경영계획 이외의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- 2) 타회사에의 투자 및 투자로부터 발생할 이익 또는 손실의 처분
- 3)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4)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5)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- 6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- 7)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에 관한 사항

4. 이사회에 관한 사항

- 1) 이사회 규정의 개·폐
- 2)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
- 3) 이사의 경업, 타사 임원 겸임의 승인
- 4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5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6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,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.

5. 기타

- 1)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
- 2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회사경영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5장 위임 등

제13조(위임)

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14조(경영위원회 위임사항)

- ① 이사회는 다음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경영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경영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 1. 통상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
 2. 일정 규모 이하의 투자 집행에 관한 사항
 3. 영업상 관례적인 이사회결의서 제출 사항
 4. 기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반 경영사항
- ② 제1항에서 정한 일반적인 경영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첨부1에 의한다.

제15조(사후승인)

-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는 추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전항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.

제16조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에 특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한다.

제6장 회의 관리

제17조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, 각 이사를 보좌하고 회의의 소집통보, 의사록의 작성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8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9조(규정의 개·폐)

이 규정의 개·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(제·개정)

- ① 이 규정은 2000년 05월 0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③ 이 규정은 2009년 09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④ 이 규정은 2011년 01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⑤ 이 규정은 2011년 05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⑥ 이 규정은 2013년 0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⑦ 이 규정은 2015년 05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⑧ 이 규정은 2015년 0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⑨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⑩ 이 규정은 2024년 04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첨부1. 일반 경영사항 중 경영위원회 위임기준<개정 `23. 12. 14.>

구 분	세 부 내 역	비 고
<p>통상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</p>	<p>1. 건별 자기자본의 2.5% 이상 5% 미만의 기채(차입 및 연장) - 사채 발행을 제외한 장 단기 차입, 한도 약정, 외환거래 약정 등을 포함 ※ 단, 건별 자기자본의 2.5% 미만의 기채 거래 또는 사업계약에 수반되는 지급보증(입찰/계약이행/선수금환급/하자보수/오피셋 계약이행보증 등)의 경우 대표이사에게 위임 2. 이사회에서 기 승인된 한도 범위 내에서의 회사채 발행조건 결정 3. 건별 자기자본의 2.5% 미만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</p>	
<p>투자에 관한 사항 (타회사에의 투자 제외)</p>	<p>1. 경영계획 외의 투자로서 건별 투자규모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시설투자 및 개발투자 ※ 건별 투자규모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표이사에게 위임. ※ 개발투자는 당사 자체부담금액 기준</p>	
<p>기타 사항</p>	<p>1. 기 승인된 한도내의 사업계획 일부 수정 2. 일반적인 소송의 제기과 화해에 관한 사항</p>	